2023년 귀속 소득ㆍ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내역 [건강보험료]

(조회기간 : 2023년 01 ~ 12월)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정민지	970903-2209015		

■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내역

(단위:원)

의벼	보수월액(고지금액)	소득월액(납부금액)		
월별	건강보험료①	장기요양보험료②	건강보험료③	장기요양보험료④	
01월	89,680	11,480	0	0	
02월	109,160	13,980	0	0	
03월	99,420	12,730	0	0	
04월	99,420	12,730	0	0	
05월	99,420	12,730	0	0	
06월	99,420	12,730	0	0	
07월	99,420	12,730	0	0	
08월	99,420	12,730	0	0	
09월	99,420	12,730	0	0	
10월	99,420	12,730	0	0	
11월	99,420	12,730	0	0	
12월	99,420	12,730	0	0	
연말정산	-42,980	-5,260			
합계	1,150,060	147,500	0	0	
총합계				1,297,560	

1. 보수월액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 (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에는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

-1-

2. 소득월액 보험료 :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귀속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기본내역 [고용보험료]

(조회기간 : 2023년 01 ~ 12월)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정민지	970903-2209015		

■ 고용보험료 고지내역

(단위:원)

월별	고지금액
01월	22,770
02월	27,710
03월	25,240
04월	12,310
05월	25,240
06월	25,240
07월	25,240
08월	25,240
09월	25,240
10월	25,240
11월	25,240
12월	25,240
합계	289,950

1. 고지금액: 근로복지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실제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급액입니다. (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

-2-

- 2. 시점에 따라 월별 고지금액이 마이너스(-)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 3. 건설업, 벌목업 사업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국민연금보험료]

(조회기간 : 2023년 01 ~ 12월)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정민지	970903-2209015	

■ 국민연금보험료 내역 (단위:원)

월별	직장가입자 고지금액	지역가입자 등 납부금액
01월	113,850	0
02월	113,850	0
03월	113,850	0
04월	113,850	0
05월	113,850	0
06월	113,850	0
07월	89,140	0
08월	89,140	0
09월	89,140	0
10월	89,140	0
11월	89,140	0
12월	89,140	0
직장가입자 소급고지금액	0	
추납보	험료 납부금액	0
실업크레딧 납부금액		0
합계	1,217,940	0
	총합계	1,217,940

- 1. 직장가입자 고지금액: 국민연금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 (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
- ※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근로자는 해당 지원금이 공제된 금액으로 월별 고지금액이 제공되며, 지원금 공제 시점에 따라 월별 고지금액이 마이너스(-)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 2.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은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지출처별)내역 [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조회기간 : 2023년 01 ~ 12월)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정민지	970903-2209015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단위:원)

	상 호		보험종	류			
종류	사업자반	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납입금액 계
	종피보험자1(수익자)		종피보험자2(수익자)		종피보험자3((수익자)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실손의료비보험1904				
보장성	201-81-45	593	320191253181		970903-*****	정민지	105,060
	삼성화재해상보험 (주)		애니카다이렉트	애니카다이렉트_개인용			
보장성	202-81-45617		123B2891410000		690729-*****	황경순	867,960
	인별합계금액						973,020

1. 공제 대상: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2. 공제 한도 : 100만원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지출처별)내역 [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조회기간 : 2023년 01 ~ 12월)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황경순	690729-2063210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단위:원)

	상 호		보험종류				
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	자	납입금액 계
	종피보험자1(수익자)		종피보험자2(수익자)		종피보험자3(수익자)	
	교보생명보험 (주)		(무)교보내게맞는건강보험(간				
보장성	102-81-11097		216063010	0051	591019-*****	황금순	482,085
	교보생명보험	(주)	(무)교보내맘쏙	건강보험			
보장성	102-81-11	.097	222040156	5830	690729-*****	황경순	114,816
	교보생명보험 (주)		(무)교보든든해요?	디매보험2종			
보장성	102-81-11097		222110147	7226	591019-*****	황금순	374,730
	한화손해보험(주)		무배당 마이라여	기프 한아			
보장성	116-81-46445		LA20165931143000		591019-*****	황금순	1,029,538
	교보생명보험 (주)		무배당교보괜찮아요암보험(갱신				
보장성	102-81-11	.097	222110127871		690729-*****	황경순	332,310

1. 공제 대상: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2. 공제 한도 : 100만원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지출처별)내역 [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조회기간 : 2023년 01 ~ 12월)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황경순	690729-2063210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단위:원)

	상 호		보험종류				
종류	사업자번	[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납입금액 계
	종피보험자1(수익자)		종피보험자2(수익자)		종피보험자3(수익자)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실손의료비보	실손의료비보험1904			
보장성	201-81-45	593	320190631	L295	690729-*****	황경순	339,790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참좋은 훼밀리플러 190	참좋은 훼밀리플러스종합보험 190			
보장성	201-81-45593		320190631	L302	690729-*****	황경순	440,000
	한화생명보험 (주)		한큐가입간편건강	한큐가입간편건강(갱)2204(무)			
보장성	116-81-11757		200423720		591019-*****	황금순	604,728
인별합계금액		3,71			3,717,997		

1. 공제 대상: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2. 공제 한도 : 100만원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의료비]

(조회기간 : 2023년 01 ~ 12월)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정민지	970903-2209015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130-12-16956	김안경센터	안경 또는 콘텍트렌즈 구 입비용	133,000
107-82-03997	(의법) 건양의료재단	일반	20,600
245-18-00869	으뜸50안경등촌점	안경 또는 콘텍트렌즈 구 입비용	164,000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20,600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297,000
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			0
인별합계금액			317,600

- 1.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 미용 목적 성형(교정)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보약)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7-

- 2. 공제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건강보험 산정특례자·난임시술비(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
 -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의료비]

(조회기간 : 2023년 01 ~ 12월)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황경순	690729-2063210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117-91-43848	마이내과의원	일반	70,160
117-06-76038	대우마이빌약국	일반	3,200
327-02-00990	햇살온누리약국	일반	62,070
732-98-00628	서울 선 정형외과	일반	155,820
166-52-00314	더선약국	일반	10,100
493-05-00866	목동 센트럴 이비인후과의원	일반	12,500
496-14-00950	송약국	일반	12,320
245-18-00869	으뜸50안경등촌점	안경 또는 콘텍트렌즈 구 입비용	30,000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326,170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30,000
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			0
인별합계금액			356,170

- 1.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 미용 목적 성형(교정)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보약)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8-

- 2. 공제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건강보험 산정특례자·난임시술비(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
 -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기본내역 [교육비: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조회기간 : 2023년 01 ~ 12월)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정민지	970903-2209015	

■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내역

(단위:원)

자료제출기관		원리금상환액
상호	사업자번호	(콩제대상큼액)
(재)한국장학재단	104-82-10922	10,771
인별합계금액		10,771

- 1. 공제 대상: 학자금대출(등록금 대출에 한정)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제외)
 - ※ 공제대상 학자금대출의 종류
 - 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같은 조 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②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학자금 융자 지원 사업을 통한 학자금 대출

-9-

- ③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 대출
- 2. 공제 한도: 한도 없음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사용처별)내역 [신용카드]

(조회기간 : 2023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정민지	970903-2209015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단위:원)

구분	일반	전통시장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비이용분	합계금액
2023년 합계	11,045,260	80,500	789,540	0	11,915,300
1월~3월	3,208,900	44,000	188,770	0	3,441,670
4월~12월	7,836,360	36,500	600,770	0	8,473,630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신용카드	214-81-37726	비씨카드 (주)	대중교통	0
신용카드	213-86-15419	현대카드주식회사	일반	11,041,960
신용카드	213-86-15419	현대카드주식회사	전통시장	80,500
신용카드	213-86-15419	현대카드주식회사	대중교통	10,800
신용카드	101-86-61717	(주) KB국민카드	일반	3,300
신용카드	101-86-61717	(주) KB국민카드	대중교통	778,740
인별합	계금액			11,915,300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 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사용처별)내역 [직불카드 등]

(조회기간 : 2023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정민지	970903-2209015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단위:원)

구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2023년 합계	4,407,123	143,800	0	44,000	4,594,923
1월~3월	1,418,280	0	0	0	1,418,280
4월~12월	2,988,843	143,800	0	44,000	3,176,643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직불카드 등	214-81-37726	비씨카드 (주)	일반	312,760
직불카드 등	214-81-37726	비씨카드 (주)	전통시장	18,000
직불카드 등	202-81-48079	신한카드 주식회사	일반	0
직불카드 등	202-81-48079	신한카드 주식회사	전통시장	0
직불카드 등	101-86-61717	(주) KB국민카드	일반	4,024,463
직불카드 등	101-86-61717	(주) KB국민카드	전통시장	121,800
직불카드 등	101-86-61717	(주) KB국민카드	도서공연등	44,000
직불카드 등	201-81-68693	(주)국민은행	일반	69,900
직불카드 등	201-81-68693	(주)국민은행	전통시장	4,000
인'	별합계금액			4,594,923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사용처별)내역 [직불카드 등]

(조회기간 : 2023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황경순	690729-2063210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단위:원)

구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2023년 합계	6,503,003	186,730	0	0	6,689,733
1월~3월	1,705,630	10,000	0	0	1,715,630
4월~12월	4,797,373	176,730	0	0	4,974,103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직불카드 등	214-81-37726	비씨카드 (주)	일반	3,991,460
직불카드 등	214-81-37726	비씨카드 (주)	전통시장	137,490
직불카드 등	109-82-04731	새마을금고중앙회	일반	2,480,200
직불카드 등	109-82-04731	새마을금고중앙회	전통시장	37,300
직불카드 등	109-82-04731	새마을금고중앙회	대중교통	0
직불카드 등	202-81-00978	중소기업은행	일반	31,343
직불카드 등	202-81-00978	중소기업은행	전통시장	11,940
인	별합계금액			6,689,733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23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정민지	970903-2209015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

(단위:원)

구분	일반	전통시장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비이용분	주택임차료 거래	합계금액
2023년 합계	293,315	0	0	0	0	293,315
1월~3월	95,225	0	0	0	0	95,225
4월~12월	198,090	0	0	0	0	198,090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13-

-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현금영수증신용카드미발급/발급거부 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또는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 2. 국세청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는 주택임차료(월세) 거래분은 일반거래금액으로 계산함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23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정민지	970903-2209015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종류		월별 공제대상금액				
	01월	02월	03월	04월	고레디사그에	
	05월	06월	07월	08월	공제대상금액	
		09월	10월	11월	12월	
		49	70,426	24,750	24,750	
현금영수증 일반거래	12,315	37,185	24,750	24,750	293,315	
	24,750	24,750	24,840	0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14-

-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현금영수증신용카드미발급/발급거부 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또는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 2. 국세청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는 주택임차료(월세) 거래분은 일반거래금액으로 계산함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23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황경순	690729-2063210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

(단위:원)

구분	일반	전통시장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비이용분	주택임차료 거래	합계금액
2023년 합계	2,239,726	0	0	53,990	0	2,293,716
1월~3월	456,426	0	0	30,800	0	487,226
4월~12월	1,783,300	0	0	23,190	0	1,806,490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15-

-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현금영수증신용카드미발급/발급거부 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또는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 2. 국세청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는 주택임차료(월세) 거래분은 일반거래금액으로 계산함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23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황경순	690729-2063210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단위:원)

		월별 공제대상금액				
78	조 근	01월	02월	03월	04월	고레디사그애
구분	종류	05월	06월	07월	08월	공제대상금액
		09월	10월	11월	12월	
		308,826	123,500	24,100	95,199	
현금영수증	일반거래	167,080	231,457	278,958	240,386	2,239,726
		88,450	180,786	241,190	259,794	
		0	30,800	0	0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비등거 래	23,190	0	0	0	53,990
		0	0	0	0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16-

-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현금영수증신용카드미발급/발급거부 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또는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 2. 국세청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는 주택임차료(월세) 거래분은 일반거래금액으로 계산함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